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68

발의연월일: 2024. 7. 2.

발 의 자:양부남·장경태·복기왕

안규백 • 민형배 • 정준호

권향엽 • 박해철 • 정진욱

조인철 • 박희승 • 채현일

이기헌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감사원 및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·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·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바,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(대통령령 제3 3205호)의 해석에 근거하여 조사·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협조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조사·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.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

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징 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3조제4항). 법률 제 호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·수사기록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사·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적용례)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	개 정 안
현 제73조(징계의 (생 략) <u><신 설></u>		~	3	개 정 안 제73조(징계의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수 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 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・경찰, 그 밖 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
				정하는 조사·수사기록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 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